

서울특별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

○ 존경하는 민병주 위원장님!

그리고 주택공간위원회 선배 동료 위원님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최재란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 본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필수공동시설 중 경로당의 세대규모별 면적기준을 상향하고, 각 필수공동시설마다 2,000세대 이상 규모에서 적용하는 면적 기준을 신설하여 대단지 공동주택이 늘어나는 현 상황에 대응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 평균수명의 증가에 따라 노인 인구는 나날이 증가세에 있고,

우리나라는 2025년 초고령 사회에 진입할 전망입니다.

이에 2014년에 마련된 경로당의 최소면적 기준을 현 상황에 맞도록
상향 조절하여 노인복지시설의 중요성을 강조하고자 합니다.

또한, 최근 2,000세대 이상 대단지 공동주택을 다수 추진하고 있으나
현재 필수공동시설 면적 기준은 1,500세대 이상에 모두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세대수에 따라 필수공동시설 면적을 확대할 수 있도록 면적 기준을
세분화하고자 합니다.

○ 존경하는 민병주 위원장님!

그리고 주택공간위원회 선배 동료 위원님 여러분!

초고령 사회 진입을 눈 앞에 두고 있는 우리나라의 상황과

재개발, 재건축을 통한 대단지 공동주택을

다소 추진하고 있는 주거 환경의 변화에 발맞춰

능동적이고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본 조례 개정안을 발의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앞서 말씀드린 제안 취지를 감안하셔서

아무쪼록 원안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